

평정자와 확인자

기 관 별			구 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대법원	법정	원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연수	연구	원원 원원 원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등하	법법	원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지	소속	5급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사무국장
		사무국을 두지 않은지	소속	5급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1)	지원장
	시·군법원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지	소속	5급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을 두지 않은지	소속	5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원장
	등기국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등기소	본원 소속		5급 (6급 이하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지	소속	5급 (6급 이하소장 포함)	지원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사무국장

- * 등기소 및 과에 속하여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등기소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시·군법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시·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정은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의 평정자·확인자는 연구관은 5급의, 연구사는 6급 이하의 경우와 같다.

1) 사무국을 두지 않은 지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자인 "소속 과장"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의 과장을 의미한다.